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13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7. 23.

판 결 선 고 2019. 9. 24.

주 문

1.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41,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4,3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1] B로부터 [redacted]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 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9.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7.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계약금액 43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19. ~ 2015. 3. 20.]을 체결하였다(이하, 본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에 2015. 1. 7. 86,000,000원, 2015. 2. 9. 215,000,000원, 2015. 3. 13. 137,800,000원 합계 438,8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은 존치기간이 1년 이하(2014. 9. 17. ~ 2015. 5. 30.)인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5. 27. 위 건물의 존치기간을 2016. 1. 9.까지로 연장하는 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자, 원고는 2015. 6. 8. 위 건물의 매매대금 318,181,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6,999,990원

1)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공사비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4. 12. 원고에게 취득세 10,341,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4,340원 합계 11,295,640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존치기간은 2014. 9. 17. ~ 2015. 5. 30.로서 1년 이하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 ○ 이후 원고가 2015. 5. 27.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함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음. ○ 그러나 원고는 2014. 12. 19. D와 계약금액 43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7.에 78,181,818원을, 2015. 2. 9.에 195,454,54,원을, 2015. 3. 13.에 125,272,728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였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취득 시기 이전에 건물 개보수공사비용 중 일부를 지출하였고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8.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함.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2015. 1. 9. 위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2015. 5. 27.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사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시기' 자체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는 "건축물의 개수"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에 불과하므로 건축물의 개수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 전액을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또한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개수' 행위가 있었다고 내세우는 것인바, 이는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아파트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2. 19.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 9.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 직후인 2015. 1. 1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3. 20.경 위 공사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공사비는 위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438,800,000원이었다.

4)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배관 등 각종 설비 설치·수리, 타일 등 시공, 모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모델하우스를 개장하여 이 사건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시기, 금액, 내용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사실상 건물 매수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건물의 효용가치 증가에 중대하게 기여하였고, 공사내역 중 일부는 '건축물의 개수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

2)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항목들(실내화 500켤레 175만 원, 외부조경공사 5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일부 공사항목들[공용공사내역 중 롤카펫, 스피커, 각종 조명(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인도받음으로써 이미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물의 '개수'는 '매매'와 별도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매수' 이후의 '개수'는 별도의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건축물의 개수"를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시 이 사건 공사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원인 중 정확히 무엇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거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소송과정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 · 추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②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취득원인이 매수인지, 개수인지 등은 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건물 매수 및 공사 행위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특수성이 있고,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입등 포함), 아트월 설치 비용 등, 세대공사내역 중 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위생기구 설치 비용 등]의 경우, 구체적인 설치 형태 · 기능이나 이 사건 건물과의 부착 · 결합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한 공사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상당해 보임에도, 피고는 위 각 항목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각 항목에 관하여 과세요건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 · 피고가 제출한 주장 및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 및 가액이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 지 호

판사 이 주 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판사 오에스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지방세법 (2015. 1. 1.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 1.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28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가액) 등을 말한다.

(끝)